

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-47호

「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5월 22일

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4·19혁명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의 자긍심과 긍지를 고취하고,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을 확대·지원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4·19혁명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함(안 제9조).

3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(참조: 복지환경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·주소·전화번호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)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

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

(전화 042-270-5066, FAX 042-270-5039, E-mail : airplane1000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보훈예우수당) ① 시장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)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「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」 제4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3호, 제5호,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
3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
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은 2021년 1월분부

터 지원한다.

신 · 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보훈예우수당) ① 시장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생존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대전광역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거주하는 사람(선순위자 1명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「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」 제4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9조(보훈예우수당) ① 시장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)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「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」 제4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3호, 제5호,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3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관 계 법 령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약칭: 국가유공자법)

[시행 2020. 1. 1.] [법률 제16851호, 2019. 12. 31., 타법개정]

제2조(예우의 기본이념)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(戰歿軍警)과 전상군경(戰傷軍警)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(龜鑑)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,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(榮譽)로운 생활이 유지·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.

제3조(정부의 시책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·발전시키며,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.

제4조(적용 대상 국가유공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(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
1. 순국선열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
2. 애국지사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
3. 전몰군경(戰歿軍警):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(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4. 전상군경(戰傷軍警):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(퇴역·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거나 퇴직(면직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사람(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

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)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(이하 "상이등급"이라 한다)으로 판정된 사람

5. 순직군경(殉職軍警)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6. 공상군경(公傷軍警)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7. 무공수훈자(武功受勳者): 무공훈장(武功勳章)을 받은 사람. 다만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.
8. 보국수훈자(保國受勳者)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
 - 나.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,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(이하 "간첩체포등의 사유"라 한다)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. 다만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.
9.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(在日學徒義勇軍人)(이하 "재일학도의용군인"이라 한다):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·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(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)
10. 참전유공자: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

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가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
된 사람

나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
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
11. 4·19혁명사망자: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
사람

12. 4·19혁명부상자: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
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
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
13. 4·19혁명공로자: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
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(建國褒章)
을 받은 사람

<중략>

5·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(약칭: 5·18유공자법)

[시행 2020. 1. 1.] [법률 제16851호, 2019. 12. 31., 타법개정]

제4조(적용 대상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
라 등록이 된 자(이하 "5·18민주유공자"라 한다)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
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
1.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: 5·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
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·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(질병
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, 「5·18민주
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

2.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: 5·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
람으로서,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5

항에 따른 장해등급(이하 "장해등급"이라 한다)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

3.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: 5·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(약칭: 특수임무유공자법)

[시행 2020. 1. 1.] [법률 제16851호, 2019. 12. 31., 타법개정]

제3조(적용 대상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
1.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: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(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)
2. 특수임무부상자: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(질병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(이하 "상이등급"이라 한다)으로 판정된 사람
3. 특수임무공로자: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